



창 원 지 방 법 원

제 1 행 정 부

결 정

사 건 2018구합652 도로교통법 제44조(안전운전의무)위반처분무효등
원 고 허찬권
경상남도 밀양시 해천안길 20-3 (내이동)

주 문

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2019. 4. 26.자 담보제공명령을 취소한다.

이 유

피고가 정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주문 기재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인 원고의 2019. 5. 7.자 항고를 인용함이 타당하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, 민사소송법 제44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19. 5. 27.

